30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원

① 수산자원 증대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과 장 김영신 사무관 정효정	044-200-5530 044-200-5536

I. 사업개요

1. 목 적

o 해역별 특성과 주요 어종을 고려한 연안바다목장,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등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연안 수산자원의 회복·증강 및 어업인 소득 증대 기여

2. 근거법령

○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수산자원관리법」제55조 의2(한국수산자원공단)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최근 4개년 실적			적	지표신출	츠저바시	
성파시표	목표치	16년	17년	18년	19년	시기	측정방식	
연안바다목장 조성(개소)	14	19	19	20	14	매년 말	조성지 개소수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개소)	11	6	6	8	11	매년 말	조성지 개소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31,400	28,400	36,400	36,400	36,400
연안바다목장	- 국 비	7,000	7,000	5,000	2,500	-
한한마어득경	- 지방비	7,000	7,000	5,000	2,500	-
산란·서식장	- 국 비	7,200	7,200	9,200	11,700	14,200
전단'시작정	- 지방비	7,200	7,200	9,200	11,700	14,200
근해자원증대	- 국 비	3,000	-	8,000	8,000	8,000

※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및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자원관리법」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 ㅇ 사업자 자격
- 「수산자원관리법」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

- ㅇ 연안바다목장 조성
- 연안 해역에 수산자원조성 시설물 설치 및 수산종자 방류 등 체계적 조성· 관리를 통한 연안 수산자원 증대
- ㅇ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
- 해역별 주요 어종에 대한 생태계 기반의 산란·서식장 조성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공급 거점 구축
- ㅇ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
- 근해 수산자원의 생활사 등을 감안한 수산자원 조성·관리 등을 통해 근해 수산자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력 확보

②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적지조사, 구조물 설치, 모니터링 조사,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 효과조사 등의 모니터링을 위한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15% 수준으로 편성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① 연안바다목장 및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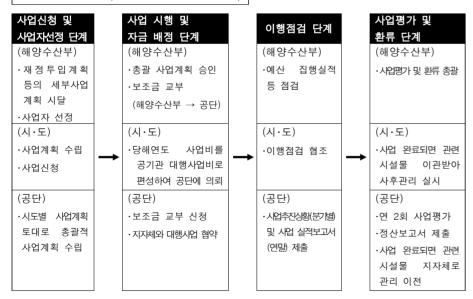
- 지원조건(재원) : 국고 50%, 지방비 50%
 - *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의 경우 대상어종 등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 지원한도(기준) : 수산자원증대사업을 신청한 지자체에 대해 자원회복 대상종의 명확성, 지방비 투입 여건, 지속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지로 선정된 경우 국비 지원(동일한 금액의 지방비 매칭)

② 근해 수산자원 중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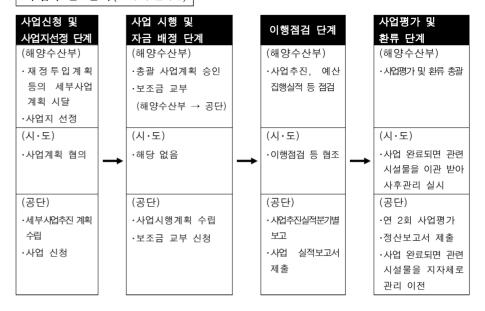
-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 지원한도(기준) :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 기본계획 및 적지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지(대상종)로 선정된 경우에 대해 국비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연안바다목장, 산란·서식장)



사업추진 절차(근해 수산자원)



1.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매년 연안바다목장 조성,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등의 사업에 대한 재정투입 계획 및 자원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추진계획 시달
- 매년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 또는 공단의 사업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사업대상지(사업자) 선정*
 - * 연안바다목장 및 산란장·서식장 조성 사업지역으로 기 예산이 확정된 지역은 당연 선정

시 ·도(지자체)

- ㅇ 관리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해당 사업지에 대한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
 - * 학계, 연구기관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 / 사업계획 수립 변경 등 심의
- **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및 동해대게 자원회복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별 실정에 따라 필요시 구성·운영
- ㅇ 수산자원증대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신청

한국수산자워공단

ㅇ 당해연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 승인 요청

2. 사업시행 및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연안바다목장 조성 등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당해연도 책정된 사업비 (국고 50% 또는 100%)를 공단의 민간자본보조로 편성 및 교부 결정 통지* 국고 100%는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에 한함
- 당해연도 책정된 지방비(50% 이상)는 지자체에서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편성하여 공단으로 대행의뢰하도록 조치 및 관리
 - * 근거: 「수산자원관리법」 제61조

시·도(지자체)

○ 당해연도 책정된 사업비(지방비 50%)를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편성하여 공단에 의뢰 및 업무관리 대행사업 협약 체결(별지 제1호서식)

한국수산자원공단

- 해양수산부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50% 또는 100%의 국비(민간자본 보조)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 보조금 교부 신청, 결정 및 정산 등의 제반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국비 100%는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에 한함
- 공단은 지자체와 업무관리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50%의 지방비(공기관 대행 사업비) 배정 요청
- 공단에서는 자금 배정이 완료되면 확정된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사업완료 후 조성해역을 지자체에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계획 변경(대상해역,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항목 등), 세부사업의 신설 및 폐지, 사업예산 변경 등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관리위원회 심의 등 지자체와 협의한 후 해양수산부에 검토·승인을 받아 실시
- **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은 지자체와 협의 없이 해양수산부에 검토·승인

3. 이행점검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실적(분기별) 및 사업비 정산(연말) 등을 통해 예산집행 및 실 적을 보고 받아 점검 및 평가
-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 집행지연, 부당집행 등의 사례 파악
- 사업관리부서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는지 점검 하고 문제 발생시 즉시 시정 조치

시·도(지자체)

- 지자체는 필요한 경우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 등을 공단 으로부터 보고 받음
- *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은 해당 없음
- ㅇ 사업관리부서로부터 현장점검 참여 및 협조요청 시 적극 참여 및 협조
-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의 경우 지자체는 사업개시 전까지 어업인 협의를 거쳐 대상해역에 대한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및 관리·이용규정을 마련 하고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기간 내에 관리수면으로 지정·고시

한국수산자원공단

- 해양수산부 사업관리부서로부터 현장점검 요청시 적극 협조하며, 점검 후 시정 조치사항 협의 수용
- 사업추진상황을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회계연도 및 보조사업이 종료될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4.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공단 주관으로 연 2회(중간평가, 최종평가)에 걸쳐 사업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도록 조치

- 평가내용은 사업추진상황, 예산집행상황,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이용관리역량, 사업추진 성과, 사업홍보 추진상황, 사회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ㅇ 점검결과 사업 지연 및 부당집행 사항 등이 있을 경우 공단에 시정조치
-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여
- 차년도 예산지원 중단 또는 감액, 신규해역에 대한 지원 보류 등

시·도(지자체)

- 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 및 사업지의 사후관리는 사업완료 후 공단 으로부터 이관 받아 사후관리 실시
- 사업 완료 후 공단과 협의하여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이용자·관리자 등 주체별 역할과 임무 등을 명시
- 사업완료 후에 사후관리 대책 및 실적을 매년 해양수산부에 보고해야 하며, 보수·보강 및 추가사업 요인 발생시 공단과 혐의 후 해양수산부에 보고

한국수산자원공단

- 연 2회(중간평가, 최종평가)에 걸쳐 사업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 * 평가위원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
- 공단은 매년 사업 종료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소요된 경비 및 관련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함
- 공단은 사업완료 후 지자체와의 업무관리 대행협약에 의거 집행내역 등을 첨부한 정산결과와 사업결과보고서를 본 사업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지자체에 통보
- *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은 해당 없음
- 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 및 사업지의 사후관리는 사업완료 후 지자체로 관리 이전

IV. 2021년도 사업 신청·선정 및 기타사항

1. 사업신청 및 선정

시 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협의하여 산란·서식장으로 적합한 해역을 선정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 신청
- ㅇ 기본계획 수립 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적지조사 결과(대상해역의 해양환경, 자원량, 해저지형 등의 기초조사에 대한 분석)
- 대상종의 생활사 및 기초 자료(해양환경, 수심분포도 등)를 활용한 종합 조성 계획도
- 산란장 및 서식장 조성을 위한 연도별 종합 계획 수립(기반시설, 종자 방류, 효과조사 등)
- 조성 후 모니터링 및 효과조사 계획, 산란·서식장 사업 후 사후관리 계획(관리수면 지정 및 예산확보 방안 등)
- 경제성 분석결과 및 지방비 투입 계획서
- ㅇ 구비서류
- 산란 · 서식장 사업추진계획서 1부(별지2호 서식)
- 산란·서식장 기본계획서 1부
-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 확약서 및 어업인 동의서(서명포함) 1부

한국수산자원공단

- (산란·서식장) 지자체에서 요청한 산란·서식장 사업 적합지 및 지자체 에서 제출한 기본계획 검토
- (근해 수산자원) 2021년 근해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해양 수산부에 제출

해양수산부

- (산란·서식장) 사업지 선정시에는 각 지자체의 사업계획서 및 기본계획서 등 구비서류 검토 후 사업 후보지를 상정하여,
- 매년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 전문가를 포함하는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기본계획 등에 대한 발표 및 심사·평가를 통해 지원요건에 적합한 사업지 결정
 - *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 대상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 규모에 따라 최종 확정
-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우선순위 기타 고려사항
-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사후관리가 우수한 해역
- 인공어초, 종자방류 등 타 수산자원조성사업과의 연계성이 뚜렷한 대상지역
- 전년도 사업신청 해역
- · 수산자원조성 관련사업(인공어초사업, 수산종자방류사업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사업지역 선정 제외
- * 어초어장관리비를 당해연도 인공어초사업비의 15% 이상 및 방류효과조사비를 당해연도 방류사업비의 10% 이상 확보 등 반드시 주수
- (근해 수산자원) 2020년도 근해수산자원조성사업 기본계획 결과를 토대로 사업지역 선정
- * 대상종의 명확성, 조성기술 수준, 자원 회복 시급성 등을 검토

2. 기타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2020년도 ㅇㅇ사업 업무관리 대행사업 협약서

2020.

지방자치단체장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인)

2020년도 ㅇㅇ사업 업무관리 대행사업 협약서

지방자치단체장(이하 "00시(군)"이라 한다)과 업무관리 대행자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ㅇㅇ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20년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관리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한다.

-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대행 시행함 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대행사무의 범위)** 대행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적지 조사 및 구조물 시설에 관한 사항
 - 2. 효과 등 모니터링 조사에 관한 사항
 - 3. ◇◇◇ 에 관한 사항
 - 4. △△△에 관한 사항
- 제3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사업기간 내 사업완료가 어려울 경우 사전에 "00시(군)"와(과) "공단"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사업계획서 등) "공단"은 제2조 각 호의 사업시행 전 집행일정, 사업내용, 예산집행계획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00시(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사업비 지급 등)① "사업비"라 함은 조사·설계비, 구조물 설치비, 모니터링 조사비, 기타 부대비용 등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② "00시(군)"은 "공단"이 청구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 및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급금 또는 개산급으로 "공 단"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③ "공단"은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비 집행 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근거를 명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의 수행 및 사업관리)** ①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은 제2조 각 호의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입찰, 협약 등 중요 절차 이행 시 "00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 시행 상 필요 시 "00시(군)"에 입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00시(군)"은 "공단"의 요청 등이 있을 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위원회 개최) "00시(군)"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관리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경우 위원수당 등 필요 경비는 "공단"이 부담한다.
- 제8조(지도·감독) ① "00시(군)"은 "공단"에 대하여 대행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대행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00시(군)"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관계법령·규정 및 이 협약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 자료의 제출 등) ① "공단"은 "00시(군)"이 지정하는 자의 사업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은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타기관 등에 제출할 시는

"00시(군)"과 사전 협의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사본 1부를 "00시(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험부담 및 배상책임) ① 사업수행 중 "공단"의 관리자가 선량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00시(군)"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발생한 손해를 "공단"이 부담하여야 한다.
 - ② 사업 수행 중 발생한 "공단"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공단"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공단"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인명 및 재산 등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공단"이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고와 민원 등 분쟁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이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업비 정산) ① "공단"은 사업완료 후 집행내역 등을 첨부한 사업비 정산결과와 사업 결과보고서를 본 사업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00시(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00시(군)"의 보완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은 제①항의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분에 대하여는 "00시(군)"에 반납하여야 한다.
- 제12조(협약의 해지 등) ① "00시(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전재,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 2. "00시(군)"의 예산사정, 기타 국가시책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 속수행이 불가능할 때
 - 3. 기타 사정으로 "00시(군)", "공단" 쌍방이 협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 하였을 때
 - 4. "공단"이 사업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 5. "공단"이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때
 - ② "00시(군)"은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에 의견진술 등 청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공단"은 협약 해지 시 본 협약과 관련된 각종 증빙서류와 사업비 집행내역서 및 집행 잔액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제13조(비밀유지) "공단"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정보 등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4조(위탁대행 수수료)** "00시(군)"이 "공단"에게 본 사업을 위탁 대행함에 있어 수수료는 본 사업비의 △%로 한다.
- **제15조(보고의무)** "공단"은 "00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추진사항을 매분기 등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용어해석 및 분쟁해결)

- ① 본 협약의 용어해석에 관하여 "00시(군)"과 "공단"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00시(군)"과 "공단"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00시(군)"의 해석에 따른다.
- ② 본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원은 "00시 (군)"이 소재한 법원으로 한다.
- 제17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의 효력은 "00시(군)"과 "공단"이 상호 서명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 ②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00시(군)"과 "공단"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000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사업 추진 계획서

개	岛
---	---

- □ 위 치 :
- □ 조성면적 : 000km²(00,000ha)
- □ 사업기간 : 0000~0000(5년간)
- □ 사업비 / 지원조건 : 00억원 / 국비 50% 지방비 50% 이상
- □ 대상 품종 :
- □ 사업추진 경위
- O '00∼'00 : 예비타당성 조사
- '00~'00 : 산란·서식장 후보지 선정 기초조사 및 기반조성 연구
- O '00~ : 사업 착수

수역내 어업실태 및 특성

- □ 어업 현황
- O 어업인수:
- O 연안어업:
- O 구획어업:
- O 마을어업:
- □ 어업 특성
- 0
- 0

ス	납	추진	방형	ŧ

주요 사업내용

- □ 산란장
- □ 서식장
- □ 종자방류
- □ 효과조사 및 사후관리

연차별 투자 계획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재 원	총 계	0000	0000	0000	0000	0000	비고
	합 계							
합 계	국 비							
	지방비							
	합 계							
산란장	국 비							
	지방비							
	합 계							
서식장	국 비							
	지방비							
	합 계							
종자방류	국 비							
	지방비							
효과조사 및 사후관리	합 계							
	국 비							
기구간역	지방비							

종합 조성계획도
□ 해역 현황도(수심, 어장분포, 해양환경 등)
□ 종합 조성계획도
향후 추진계획

□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자율관리공동체 구성

→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계획 등 * 사업타당: 000국 000과 000사무관(전화:

② 바다숲 조성관리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과 장 김영신 사무관 정효정	044-200-5530 044-200-5536

I. 사업개요

1. 목 적

- 전국 연안의 갯녹음 발생 해역과 바다숲 조성이 가능한 해역에 대규모 바다 숲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연안 생태계 및 수산자원 서식처 복원
- 바다숲을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으로 활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국민들의 해양 레저관광에 활용함으로써 어촌의 소득향상에 기여

2. 근거법령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수산자원관리법」제55 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5조(친환경 농 림수산의 촉진 및 탄소흡수원 확충)

3. 성과목표 및 지표

○ 매년 대규모 바다숲을 조성관리하여 2030년까지 54,000ha 바다숲 조성

성과지표	2020	최	근 4개	년 실	적	지표산출	측정방식	
· 경파시표	목표치	16년	17년	18년	19년	시기	= প্রস্থা	
바다숲 조성면적(ha)	3,000ha	3,064	3,043	3,108	3,130	매년 말	바다숲 신규조성 면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33,425	35,000	40,000	40,000
- 국 비	33,425	35,000	40,000	40,000
- 지방비	1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수산자원관리법」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2. 사업자격 및 운영, 선정 제외대상

- ㅇ 사업자 자격
- 「수산자원관리법」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주 주용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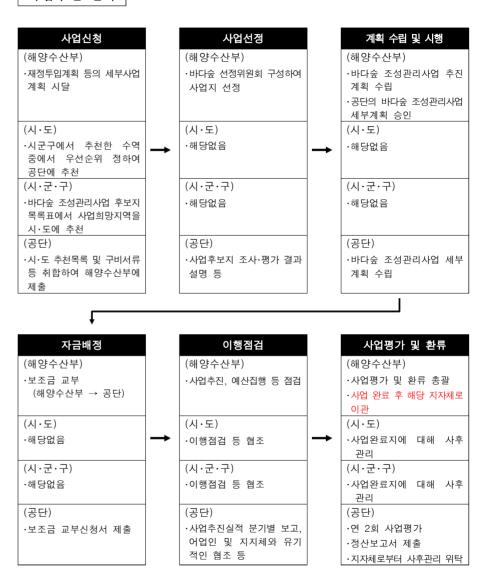
- 바다숲 조성·관리하여 연안생태계가 복원 및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조금 을 사업시행자(한국수산자원공단)에 지급
-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수역의 바다숲 조성관리, 갯녹음 확산 선제 적 예방을 위한 천연해조장 보호·보전, 바다숲 조성 기술개발 및 바다 식목일 행사 등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조건(재원) : 국고 보조 100%
- 지원한도(기준) : 바다숲 적지조사를 거쳐 사업지로 선정된 경우, 기 사업 지에 대한 관리 등에 대해 국비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1.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매년 바다숲 조성사업 재정투입 계획 및 사업요건 등을 포 함하 사업추진계획 시달
- 해양수산부는 사업추진 성과 및 재정여건과 해역별 해양환경 실태 등을 종 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규모 시달

시·도 및 시·군·구

- 시·군·구에서는 공단에서 작성한 바다숲 조성관리사업 후보지 목록표 (별지 제1호서식)에서 사업 희망 수역을 선택하여 해역별 바다숲 조성사업 후보지 추천 목록(별지 제2호서식)과 해당 어촌계의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시·도에 추천
- 시·도에서는 시·군·구에서 추천한 수역 중에 우선 순위를 정하여 공단에 추천
- ㅇ 구비서류
- 바다숲 조성관리사업 후보지 추천서 1부(별지 제3호서식)
-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 확약서 및 어업인 동의서(서명 포함) 1부

한국수산자원공단

○ 공단은 사업시행 해역별 사업후보지 조사·평가 결과, 시·도 추천 목록 및 구비서류 등을 취합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2. 사업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공단에서 제출한 사업후보지 조사·평가 결과, 각 시·도의 추천 목록 및 구비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최적의 조건을 가진 수역을 사업지로 선정
- ㅇ 선정 방법
- 해양수산부, 공단,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10인 이내로 "바다숲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후보지 조사·평가 결과 및 후보지 추천 목록 및 구비서류 등을 참고하여 선정

- ㅇ 선정 우선순위
- 개녹음 진행해역으로 정부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수역
- 인공어초 등 설치보다 자연암반 활용·개선 등을 통해 바다숲 조성이 가능한 수역
- 어촌계 참여 및 지자체의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등 사업 협조가 적극적인 수역
- 바다숲 조성사업지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바다숲 조성완료지에 대해 사후관리 등이 우수하게 진행되는 지자체가 신청한 해역
- 접근성 및 생태체험 등 친수공간으로서 활용성이 높은 수역
- 전년도에 추천지역 중에서 재선정 가능한 수역
- 수산자원조성 관련사업(인공어초사업, 수산종자방류사업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어초어장관리비를 당해연도 인공어초사업비의 15% 이상 및 방류효과조사비를 당해연도 방류사업비의 10% 이상 확보 등 반드시 준수

한국수산자원공단

○ 공단은 해양수산부에서 개최하는 "바다숲 선정위원회"에서 사업후보지 조 사·평가 결과와 시·도 추천 목록 및 구비서류 등 관련정보 설명

3.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 바다숲 조성 대상지가 선정되면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바다숲 조성 관리사업추진계획'을 수립
- 사업 추진계획에는 사업개요, 부문별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바다숲 조성 관리, 천연해조장 보호·보전, 기술개발사업, 공감대 형성 등 포함)
-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사업추진 현장 상황 점검 및 각종 업무협의회 등을 개최

한국수산자원공단

- 해양수산부의 '바다숲 조성관리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당해연도 세부사 업계획을 수립
- 당해연도 세부사업계획이 수립되면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확정
- 당해연도 세부사업계획에는 대상수역의 해저지형 및 해양환경, 생태특성 등 기반조사 등을 토대로 조성수역 범위, 시설 면적, 조성방법, 관리방법, 모니터링 및 효과조사, 기술개발 및 공감대 형성 등 사업전반을 포함
- 공단은 매년 당해연도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해역별로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바다숲 조성 생물의 순기와 생태, 해양환경 등 해역별 특성에 맞게 사업 수행
- ㅇ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세부사업계획은 해역별 특성에 맞는 주요 조성 방법 및 바다숲이 안정 적으로 유지되고 효과가 확산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 수립
- 바다숲 조성 및 관리의 종료 확정을 위한 대상지, 진단·평가 조사, 종 료 기준 및 절차 등 관리계획 수립
- 자연암반 활용·개선과 친환경적 방법(친환경 자재 사용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 수립
-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현안 및 재난 발생 시에 체계적 상황전파, 대응방안 수립 및 피해 대응 등 재난(위기) 관리 체계 구축

4.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공단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되 사업계획서에는 사업개요, 사업수행계획, 예산집행계획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정산 및 보조금 지급 절차>

- 공단은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 2개월 이내에 당해연도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목별 및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예산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정산서를 해양수산부 사업담당 부서에 제출
- 사업비의 집행은 예산회계관계법령, 관련규정 및 정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집행
-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
- ㅇ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은 정산보고서를 제출

5. 사업 이행 및 점검단계

《총 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바다숲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업무 협의회 및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지도·점검
- 해양수산부는 공단이 보고한 사업 종료내용(진단·평가 조사결과 및 위원회 개최 결과)을 검토하여 바다숲 조성사업 완료에 대한 최종 판정 실시(확정)
- 해양수산부는 바다숲 조성효과의 안정적 유지·확산을 위해 사업 완료지 를 해당 지자체 이관
-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현안 및 위기(재난)에 대하여 대응체계에 따라 상황파악 및 해결방안을 공단에 지시하거나 필요시 직접 대응

《사업 이행》

한국수산자원공단

- ㅇ 공단은 개별 사업수역에 대하여 4년간 조성관리 실시
- * 모니터링을 통해 4년 이내라도 바다숲 조성이 안정화된 경우에는 관리를 조기에 종료할 수 있으며, 추가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간 연장 가능(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

- 공단은 바다숲 조성 및 관리 이후, 진단·평가 과정을 통하여 사업 종료 가 확정된 수역의 진단·평가 결과, 이력카드 및 완료보고서 등을 해양수 산부에 결과 보고
- * 사업 종료 후에도 공단은 바다숲 조성효과의 안정적 유지·확산을 위해 사후관리 (모니터링, 조식동물 구제, 해조류 이식 등)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기술지원 등 지자체의 사후관리 적극 협조
- 공단은 바다숲 조성관리사업 수행과정에서 해양수산부, 관할 지자체, 유관 기관 및 어업인과 사업설명회, 업무협의회 및 좌담회 등을 개최
- 공단은 바다숲 조성 계획에 따라 해역특성 및 해조류 생활사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바다숲 조성 수행
- 바다숲 조성은 연안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서식처를 회복시키는 사업으로 해조숲, 해초숲 및 산호숲 등을 포함하여 해역특성에 맞게 바다숲을 조성
- 해조숲 조성 방법은 갯녹음 암반 복원 및 해조류 부착 암반 확장(갯닦 기, 해조류 종자부착판 설치, 해조류 이·보식, 바다숲 조성용 어초 설치, 자연석), 해조류 포자 확산단지 조성(수중저연승, 모조주머니 등), 조식 동물 밀도제어, 환경 개선 등으로 해역특성에 맞게 대상생물의 재생산 및 확산을 최대한 고려하여 수행
- 갯녹음 발생 등의 자연암반을 활용·개선하는 방법을 바다숲 조성 시 우선 고려
- 대상 해조류는 다년생(감태, 곰피, 모자반, 다시마 등) 및 단년생(미역, 쇠미역 등) 중 해역특성에 맞게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품종을 선정
- 바다숲 조성 해조류 및 해초 종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민간 계약재 배, 자체생산 및 관할 행정관청의 채취 승인 등 세부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사 전 준비
- 바다숲 조성용 어초 선정은 어초 효율성, 안정성, 경제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바다숲 조성관리사업 인공어초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 선정은 해양수산부 훈령 「인공어초설치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수행, 어초의 제작 설계 및 설치 감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음
- ㅇ 바다숲 조성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정기 및 수시로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항목 : 갯녹음 해소율, 해조류 천이와 생물상 변동, 이식해조류의 생장 및 생존율, 설치 어초의 안정성과 부착생물상 등 조사

- 조식동물(성게류, 고등류, 군소류 등)의 서식밀도를 일정한 수준 이하로 유 지하여 조성된 바다숲을 보호하고 확산토록 함
- 특히 바다숲 조성 당해 연도에는 수시로 구제작업을 실시, 해조류 생존율 제고
- * 어촌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해당 어촌계와 협조하여 얕은 수심은 해녀, 깊은 수심은 전문 잠수사 및 자율관리어선 등을 활용하여 조식동물 구제)
- 이식 해조류의 생장 및 생존율이 불량한 경우 해조(초)류 보식
- 다른 해조류에 비해 생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자연재해 등 외부환경에 의해 조성 당시에 비해 생존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해조(초)류 보식
- 조성된 바다숲의 보식 및 조식동물 먹이 공급용 등 종자은행(seed bank) 역할의 목적으로 해조류 양성장을 운영할 수 있음(연구교습어장으로 지자체 허가)
- 양성장 시설은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에 위탁 가능
- 바다숲 조성해역의 해조류 생장을 저해하는 페어구 및 폐기물을 수거·처 리하며, 친환경재료 사용을 확대하여 플라스틱 등의 폐기물 절감 노력
- 자연재해(태풍 등) 발생에 대응한 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시설 안정성 확보

시·도 및 시·군·구

- 바다숲 조성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바다숲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사업추진 단계마다 적극 협조하고 어촌계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 해당 지자체는 사업수행에 따른 각종 사업설명회, 업무협의회 및 자문회의 등에 참석하고 바다숲 관리 사업 적극 지원
- 바다숲 조성 해조류 및 해초류 종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관할 행정관청은
 채취 승인 등에 적극 협조
- 해당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해양수산부 사업 완료지 이관 조치에 따라, 바다숲 조성효과의 안정적 유지·확산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적극적인 사후관리 실시

《점 검》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바다숲 조성용 어초의 설치, 해조류 이식 및 기타 조성방법 등이 적기에 추진되는지를 점검하고 문제 발생 시, 시정토록 요구
- ㅇ 매분기 사업추진 실적, 성과 및 예산집행실적 등을 점검

한국수산자원공단

ㅇ 공단은 사업추진 실적, 성과 및 예산집행실적 등을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제 재》

해양수산부

- 사업대상자의 불법 행위 및 사업비 부정 집행 적발 시, 관련 사업 중지및 사업비 환수조치
- 사업지연 및 성과 미흡한 수역에 대해 시정조치 및 사후관리 미흡지역에 대해 차기년도 사업지 선정 시에 패널티 부여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공단이 적기에 중간 및 최종 평가, 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평가에 참여하거나 점검하고 최종 평가 결 과를 분석

한국수산자원공단

- 공단은 연 2회(중간, 최종)에 걸쳐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 중간평가(7월)와 최종평가(12월) 실시

- 평가위원은 7명 이상, 외부평가위원으로 구성
- 평가내용은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수행 실적 및 성과, 예산집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중간 및 최종 평가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성과측정》

해양수산부

○ 연도 말을 기준으로 사업계획 대비 성과목표 달성도와 성과지표의 목표치 에 대한 달성 여부 측정

《환 류》

해양수산부

- 사업지연 및 성과가 미흡한 수역은 원인분석을 통해 바다숲 관리 강화 등 시정조치
- ㅇ 평가결과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한국수산자원공단

○ 평가결과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 수정 및 개선방안을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Ⅳ. 기타사항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ㅇㅇㅇㅇ년 바다숲 조성관리사업 후보지 목록표

해역	시·도	추천 후보지	면적(ha)	비고
	강원			
동해	경북			
0 9	울산			
	부산			
	인천			
서해	경기			
ХΙΟΠ	충남			
	전북			
남해	전남			
급에	경남			
제주	제 주			

[별지 제2호서식]

해역별 바다숲 조성관리사업 후보지 추천 목록

해역	시 · 군 · 구	추천 후보지	면적(ha)	순위	비고

년 월 일 신청자: 시·도지사 (서명)

[별지 제3호서식]

00 바다숲 조성관리 사업 후보지 추천서

《개 요》

- ㅇ 위 치 :
- 바다숲 수역면적 : 000k㎡(00,000ha)
- ㅇ 어촌계명 및 어촌계원 수 :

《수역내 어업실태 및 특성》

- ㅇ 어업 현황
- 어업인수 :
- 연안어업 :
- 구획어업 :
- 마을어업 :
- ㅇ 어업 특성
- -
- _
- -

《수역 특성》

- Ó
- Ò
- Ò

《해 역 도》

《관리수면 지정 등 관리이용 계획》

- ㅇ 자율관리공동체 구성
- -
-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계획 등
- -

《기대 효과》

- 0
- Ò
- .
- Ò
- ※ 사업담당 : 000국 000과 000사무관(전화 :)

③ 연어자연산란장 조성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과 장 김영신 사무관 정효정	044-200-5530 044-200-5536

I. 사업개요

1. 목 적

○ 연어자원 보호 및 자원 증대를 위하여 생태친화적 연어자연산란장을 조성하여 우리나라 연어 회귀율 확대와 관광산업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함

2. 근거법령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측정방식
	'847/11		'17	'18	'19	시기	=78787
	■ 연 어 자 연 산란장 조성	연어자연산란장 조성	_	l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12월말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6,700	1,400	1,000	8,300	6,000
- 국 비	8,350	700	500	4,150	3,000
- 지방비	8,350	700	500	4,150	3,000

**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강원도(양양군)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 ㅇ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 강원도 양양군 남대천 일원에 연어자연산란장을 설치 및 관리
- ㅇ 지원 제한 기준 및 보조금 교부조건
-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사업비의 50%를 지방비로 부담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 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 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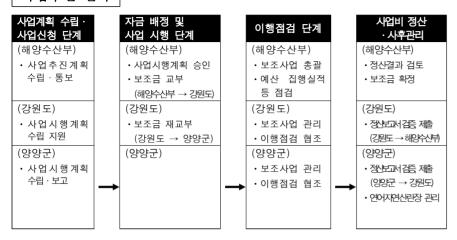
ㅇ 강원도(양양군) 연어자연산란장 조성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보조 50%, 지방비 50%)
- ㅇ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수립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 가내시 통보
- ㅇ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 통보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

강원도(양양군)

-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매년 1월)
- * 강원도는 양양군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지원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
- ㅇ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교부신청 안내

강원도(양양군)

○ 세부사업내용 및 사업비 산출내역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수립, 해양수산부에 제출(매년 1월)

3. 자금배정 및 시업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 ㅇ 강원도의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국고보조금 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강원도(양양군)는 사업종료 및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사업실적 보고서 등 정산자료를 해양수산부로 제출
- 해양수산부는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 해양수산부는 강원도(양양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도(양양군)에 예산안 통보

강원도(양양군)

-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시에는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4.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집행실적 부진 및 문제 발생 시 즉시 시정 조치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강원도(양양군)

- 강원도(양양군)은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 등을 해양수산부로 제출 및 보고
- ㅇ 해양수산부의 현장점검 지원

《제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 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5.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등 관계규정에 의함

강원도(양양군)

○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 · 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 * 필요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시에 부기등기를 요구할 수 있음

강원도(양양군)

- 최종사업 완료 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이용자· 관리자 등 주체별 역할과 임무 등을 명시
- 최종사업완료 후에 사후관리 대책 및 실적을 매년 해양수산부에 보고해야 하며, 보수·보강 및 추가사업 요인 발생시 해양수산부에 보고
-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장 비 ○건축물	5년(구입일로부터) 10년(준공일로부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 불가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사업신청 수요조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사업추진계획 통보

강원도(양양군)

- 연어자연산란장 조성의 3차년도 사업 신청을 위한 2021년 예산 지원 요구
- 강원도(양양군)에서 부담해야 될 지방비를 국비와 동일한 사업비로 편성 추진

2. 기타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 이행